

#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 商標登錄無效

〈大法院 第1部 判決〉(1981. 9. 22)

裁判長: 大法院判事 전 상 석  
關與法官: // 이 일 규 · 이 성 열

1. 審判請求人(被上告人): 윌리엄 에취 로터링크(美國 펜실베니아주 포드와 싱톤시 버지니아 드라이브 500)
2. 被審判請求人(上告人): 현대약품주식회사(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195-9)
3. 原審決: 特許廳 1979. 12. 17 字, 1977年 抗告審判 당 第114號 審決
4. 主 文: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

### 5. 理 由

被審判請求人 代理人의 上告 理由를 判斷한다.

原審은 被審判請求人이 1971. 12. 24 出願하여 1972. 5. 22 登錄된 第26, 563號 登錄商標는 “MAALOX”라는 英文字를 橫書하여 된 것으로서 第10類 制酸劑를 指定商品으로 한 것이고 그 후 被審判請求人이 1975. 1. 17 出願하여 1976. 6. 16 登錄된 第46, 255號 本件 登錄商標는 “메락스”라는 한글을 橫書하여 된 것으로서 第10類 化學品과 醫藥品을 指定商品으로 한 것임을 確定하고 나서 위 두 商標를 比較할 때 그 稱號에 있어 서로 類似할 뿐만 아니라 그 指定商品에 있어서도 同種의 商品들로 되어있어 商標法 第9條1項7號에 違反되어 登錄된 本件 商標의 登錄은 無效라고 判斷하고 있다.

살피건대 商標의 類似與否는 서로 同一한 程度가 아니라 하더라도 同種의 商品에 使用되는 두개의 商標를 그 外觀, 稱

號, 觀念을 客觀的 全體的 離隔的으로 觀察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去來上 그 各 商品間에 誤認混同의 憂慮가 있는지의 與否를 判別하는 方法에 의하여 判斷하여야 할 것인 바(當院 1970. 9. 29 宣告, 70後41判決; 1972. 1. 31 宣告, 71後37判決; 1976. 6. 28 宣告, 75後30判決 參照)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이 事件 兩商標의 發音이 “매락스” “마룩스”로서 약간의 差異가 있고 그 外觀및 觀念이 다르다고 해서 類似性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記錄과 對照하여 보면 이와 같은 趣旨인 原審의 措置는 正當하고 거기에 所論과 같은 審理未盡이나 法理誤解의 違法이 없으므로 論旨는 理由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 參 考 —

### 抗告審

1977年 抗告審判(당) 第114號 抗告審判請求人: 現代약품 公業주식회사

被抗告審判請求人: 윌리엄 에취 로터링크

위 當事者間의 1976年 審判第 277號(登錄 第46, 255號 商標登錄無效)의 審決不服 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主 文: 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審判및 抗告審判費用은 各者負擔으로 한다.

### 審 決

1976年 審判 第277號

審判請求人: 윌리엄 에취 로터링크

被審判請求人: 現代약품公業 주식회사

위 當事者間의 登錄 第46255號 商標의 登錄無效 審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主文: 本件 登錄 第46, 255號 商標는 그 登錄을 無效로 한다. 審判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